

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953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1. 5. 17

제 출 자 : 달성군수



1. 개정이유

「지역문화진흥법」 제8조에 따른 생활문화센터 신규 설치에 따라 생활문화센터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시설 운영 및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생활문화센터 적용대상에 신규 설치된 생활문화센터를 추가하고자 함(안 제 2조 관련 별표)

3. 조례안 : 따로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역문화진흥법」 제8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타

(1) 신구조문 대비표 : 붙임 참조

(2) 입법예고(2021. 4. 15. 5. 6.)결과 : 의견없음

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(4) 성별영향평가 : 원안동의

- (5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- (6) 부서합의 : 해당사항 없음

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별표】

생활문화센터의 명칭과 위치

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소재하는 생활문화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.

명칭	위치
달성군 서재행복생활문화센터	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서재로 18길 3-1
달성군 하빈행복생활문화센터	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하빈로172길 1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
<p>제2조(적용대상의 명칭과 위치) 이 조례가 적용되는 대상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.</p> <p>【별표】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생활문화센터의 명칭과 위치</p> <p>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소재하는 생활문화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.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 style="background-color: #c8e6c9;"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명칭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위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달성군 서재행복생활문화센터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서재로 18길 3-1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명칭	위치	달성군 서재행복생활문화센터	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서재로 18길 3-1	<p>제2조(적용대상의 명칭과 위치) ----- -----.</p> <p>【별표】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생활문화센터의 명칭과 위치</p> <p>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소재하는 생활문화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.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 style="background-color: #c8e6c9;"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명칭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위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달성군 서재행복생활문화센터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서재로 18길 3-1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달성군 하빈행복생활문화센터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하빈로172길 1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명칭	위치	달성군 서재행복생활문화센터	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서재로 18길 3-1	달성군 하빈행복생활문화센터	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하빈로172길 1
명칭	위치										
달성군 서재행복생활문화센터	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서재로 18길 3-1										
명칭	위치										
달성군 서재행복생활문화센터	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서재로 18길 3-1										
달성군 하빈행복생활문화센터	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하빈로172길 1										

□ 지역문화진흥법

제8조(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·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립·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
⑤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